

의안
번호

1233

창원시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의 원 : 진형익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 김상현
백승규 · 서명일 · 이우완 · 홍용채 의원(9명)

1.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반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접근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따른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

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건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

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교과용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3의3. 삭제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

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의사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진형익 의원)

의사입법담당관-1009(2026. 2. 10.)호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개정 개요

조례안	발의자	부서 검토의견
창원시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진형익 의원	○ 검토부서: 노인장애인과 ○ 관련법령 저촉 여부: 해당없음 ○ 종합의견: 붙임 검토보고서 참조

- 붙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부.
2. 붙임 서류 각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홍현정

의회협력팀장

박영수

정책기획관

전결 2026. 2. 24.

김태호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2813

(2026. 2. 24.)

접수 의사입법담당관-1288

(2026. 2. 24.)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hong3582@korea.kr / 비공개(5)

-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 -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 의원 발의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
- **상정시기** :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2026. 3월 예정)
- **발 의 자** : 진형익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와 지원 근거 명확화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기대효과** : 장애인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포용적 복지행정 실현

□ 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이미 부여된 지방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 장애인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조례임

① 법적 측면 :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40조의2
 - “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견 지원 및 인식개선 의무를 명확히 부여 ”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
 - “ 홍보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한 강행조항 있음

☞ **현 상위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히 부여한 보조금 인식 개선·홍보의 '법정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례임**

② 행정 측면 : 현장 혼선 · 민원 · 분쟁을 예방하는 관리기준 마련

○ 법은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 기준이 불명확

☞ **조례를 통해 ✓표지·안내 ✓기준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협력체계 제도화**

③ 재정 측면 : 최소 비용으로 최대 정책 효과

○ 연 평균 소요예산 약 500만원 수준, 신규 조직과 추가 인력 필요 없음

☞ **재정 부담은 매우 제한적**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금의 훈련·보급 지원 등), 동법 제40조의2 (장애인 보조금 인식개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 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인식개선 홍보에 관한 사항 정함 (안 제4조)
-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의 근거 정함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검토사항 및 의견

-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40조, 동법 제40조의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검토 의견 : **조례안 수용**
- 수용 사유

① 입법 필요성 검토 : **조례안 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
- 주로 행정·홍보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부서검토 다른 의견 없으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재정부담 검토 : **재정부담 제한적 수준**

- 본 조례안은 교육·홍보·안내 중심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재정 투입 요구되지 않으며,
- 향후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 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조문검토

조례안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1조~제6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과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이에, 타당성 인정된다고 판단	적 정

□ 비용추계 요약 : 재정소요

○ 총 소요액 : 향후 5년간 총 2,500만원 (年 5백만원)

소요 예산				
내용	횟수	과목	예산액	상세
안내문 제작	연 1회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000천원	3,000천원x1회
인식개선교육·홍보	연 2회	일반운영비(행사비)	2,000천원	1,000천원x2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시 비(100%)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산출근거 : 타 지자체 장애인 보조금 관련 조례 운영사례 참고
 - 다수 지자체가 본 조례와 유사한 형태로 안내·홍보·교육 중심 사업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시행 중임
- 우리시 산출방식과 타 지자체 운영방식 비교

	구분	우리시(안)	타 지자체 공통 운영
1	사업구조	안내 홍보 중심	안내 홍보 중심
2	인력	기존 인력 활용	기존 인력 활용
3	조직신설	없음	없음
4	연간예산	약 500만원	소규모 운영 (*최대지원 : 1천만원 ^{경기도 구리시})
5	재원	일반회계	일반회계

- 중앙정부 정책사업·유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의 비교

	구분	(중앙정부) 보조금 인식개선	(조례와 유사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1	사업내용	공익광고, 교육자료 제작, 캠페인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장애인 권익홍보 사업
2	사업구조	홍보물·교육비 중심 집행	홍보물·교육비 중심 집행
3	예산특성	행사성·시설투자 없음	행사성·시설투자 없음

- 재원 조달 방안 예산담당관 의견 반영
 -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서,
기존 복지재정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고자 함
 - 기존 예산 구조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 (재원조달 방식) 일반회계
 - 시 일반회계 복지 분야 세출예산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항목 내 편성

□ 부서 종합 의견 : 수용

○ 현상 혼선 해소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 책무와 지원체계 명확화

○ 재정 건전성 적정

▣ 인식개선·홍보 중심 사업 구조로 재정부담 제한적 수준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권익 증진과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용이 타당 하다고 판단함

참고 1. 조례 제정 입법 배경

2. 타 지자체 조례 현황

3. (참고) 장애인 보조건의 역할과 보급 실태

4. (붙임) 창원시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1부.끝.

참고 1 조례 제정 입법 배경

2025. 4. 28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신설

○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다음 내용을 포함토록

-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신설

○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함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함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타 지자체 유사 조례 현황 [36개 시·군]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합계	11	7	2	1	1
시군명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성동구, 양천구, 서대문구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광명시	대전광역시, 서구	경상북도	중구
구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합계	2	3	2	2	2
시군명	달성군, 서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전라남도, 나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충청북도, 천안시
구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1	1	1		
시군명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남도** 內 조례 제정 현황 : **없음**

○ **타 시·군 조례와 내용 비교** ※ 전국 54개 시군 중 대표성을 가지는 5개 시군 조례와 비교

구분	서울양천구	경기군포시	경기부천시	충청남도	제주도
조례명	장애인 보조건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장애인 보조건 출입보장 지원 조례	장애인 보조건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장애인 보조건 생활이용 편의 조례	장애인 보조건 보급 및 출입 보장 조례
제정일자	2022.11.10.	2025.10.10.	2021.8.17.	2024.12.24.	2017.11.29.
출입보장의무	○	○	○	○	○
표지·안내	안내자료제작규정	제작·지원	명시적 홍보포함	지원사업 명시	제작·보급
교육·홍보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원사업	지원사업추진규정	인식개선홍보·교육	기관지원·홍보 ·협력포함	기관지원·홍보 과태료 교육포함	보조건 보급지원 출입환경 개선 등
협력체계	협력체계구축규정	법인,단체	협력체계구축규정	협력체계구축규정	협력체계구축규정
특이점	구 조례 체계화	최신 통과 조례	시 차원 구체 조례	도 차원 지원강조	보급포함

참고 3 장애인 보조견 개념 및 역할

□ 장애인 보조견 개념

- 장애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훈련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개를 말함



⇒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의사소통·생활안전을 보조하는 공적 지원 수단이자 사회적 보조 도구

□ 장애인 보조견 유형

	구 분	내 용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장애물 회피 ▶ 안전한 경로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견
○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 ▶ 물건전달, 문열기, 전등 조작 등 신체활동 보조
○	청각장애인 보조견	▶ 초인종, 화재경보기, 전화벨 등 소리 전달
○	치료도우미견	▶ 정신·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림 ▶ 장애인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등을 위해 훈련된 개

□ 장애인 보조견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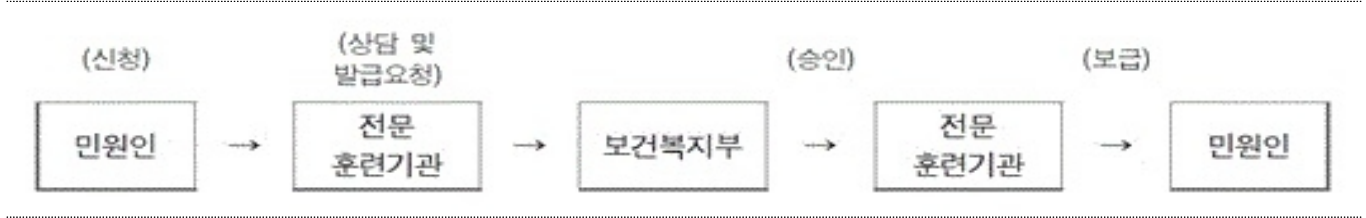
	구 분	역 할
○	이동 및 안전지원	▶ 안전한 보행경로 안내, 위험요소 사전인지
○	일상생활 보조	▶ 물품전달, 생활기기 조작, 외출 및 이동보조
○	사회활동 참여 촉진	▶ 공공시설·대중교통 이용지원, 사회활동 참여확대
○	심리·정서적 안정지원	▶ 사회적 고립 완화, 자존감 및 심리안전 강화

※ 【장애인 보조견의 사회적 의의】

장애인의 자립권 실현 수단,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 보완,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의 핵심 요소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통합 기여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절차

【참고】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발급주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현황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8

**【참고】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내용 요약

구 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전국)보급수	90마리	73마리
(창원)보급수	1마리	2마리
지원유형	안내견 ^{시각}	안내견 ^{시각} , 도우미견 ^{지체} , 보청견 ^{청각}
비 용	전액지원 (자부담 없음)	전액 수요자 자부담
사후지원	교육, 건강체크 지원	지원없음
분양대기 소요기간	2년	6개월
연간 분양수	15마리 이내	5마리 이내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1.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신청대상 보조견(해당란에 [✓] 표시)			
보조견명	성별	모색	
생년월일	년 월 일	훈련기간	월
담당조련사명	훈련이수여부 [] 훈련중 [] 훈련이수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0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 사진 1장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표 2]

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

	장애인보조견	
	발급번호	—
	훈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인]	

비고

- 규격 :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세로 45밀리미터
- 색상 : 가. 마크바탕·글씨·선: 청색 나. 마크: 흰색
- 발급번호: “발급연도” -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부착위치: 보조견 손잡이 중 알아보기 쉬운 부위에 부착한다.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를 위하여 공식 표지 제작·보급, 행동요령 지침 제작·배포, 상담·신고 창구 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례안 제4조~제5조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공식 표지 제작 및 보급
(안 제4조제1항제1호)
- 시설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 지침 제작·배포(안 제4조제1항제2호)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서 집행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
- 조례에 따른 홍보·안내 업무는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
- 신규 조직 설치 및 인력 증원은 수반하지 않음
- 홍보물 등은 최소 범위에서 간소하게 제작함

나. 추계 결과

-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연평균 약 5,000천원의 최소 비용 소요 추계
- 공식 표지 및 안내문 제작·보급: 연 3,000천원
-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기타 운영비 등 : 연 2,000천원
- ➡ 이에 따라 5년간 총 소요 비용은 25,000천원으로 추계됨

다. 재원조달방안 :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3. 작성자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이 강 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방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희 송부(진형익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희하오니 2026. 2. 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진형익 의원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김주연

입법지원팀장 장설민

★의사기록팀
장 반혜정

의회사무국장 류효중
전결 2026. 2. 10.

협조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시행 의사입법담당관-1009 (2026. 2. 10.)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5 팩스번호 055-225-4743 / jy0810@korea.kr / 대국민 공개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의 원: 진형익 의원

찬 성 의 원:

1.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반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접근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따른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

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